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시행 가능 범위 확대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8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사업 시행 가능 범위 확대	3
※ 참고자료	9
1.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조정 개요	9
2.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조정 결과(표)	12
3. 한국수자원공사 수행 사업(법 제9조 관련)	1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표)	14
5.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15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4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태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높은 대외신인도와 해외사업 경험 및 투자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업 추진에 적합하나 이러한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 불어 제한됨.

해외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외 사업 수주 시에는 국내 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동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조).

IV. 검토의견

1.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시행 가능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는 장소의 제한 없이 하수도 시설 등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① (생략)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국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3.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

③ ~ ⑤ (생략)	<u>하여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 리사업</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③ ~ ⑤ (현행과 같음)
-------------------	--

2018년 실시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¹⁾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 업무 전체를 담당하게 되면서, 물 분야 관련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존 사업 범위를 조정하여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19년 6월 양 기관은 환경부 주관 하에 협약²⁾을 맺고 기관별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하고,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참고자료 1.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조정 개요 참고).

1)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물관리 업무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2018년 6월 8일(1차)과 2020년 12월 31일(2차)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 1차 물관리 일원화에서는 댐·보 운영과 수량(水量) 업무를 이관[수자원국(1국3과), 홍수통제소(4개소), **한국수자원공사**]하였고, 2차 물관리 일원화[수자원국(1과), 유역·지방환경청(6개소)]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 일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음(「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2. 25).

2)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 협력 업무 협약’(2019. 6.)

[표] 2019년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조정 결과

분야	조정안
상수도	● 한국수자원공사 일원화
하수도	● 한국환경공단 일원화
재이용	● 한국환경공단 주관
물순환	●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비점저감 분야 한국환경공단 참여
수질	● 한국환경공단 주관
지하수	● 이용 및 현황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 ● 토양 연계 관리, 우심지역 정밀 수질 조사는 한국환경공단
시스템· 측정망 (지하수)	● 정보시스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 협의체를 운영하여 측정망·관측망 신규설치·조정계획 수립 ● 측정망·관측망은 통합 설치·운영(한국수자원공사), 오염관리가 필수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 설치·운영
물산업	● 육성 부문에서 기능별 주관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 등 물 이용, 한국환경공단 : 하수도, 오염관리) ●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 운영(한국수자원공사 협업)
비 고	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참여 가능 ② 댐 상류(수탁관리자인 경우)의 하수처리장 운영, 비점저감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참여 가능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하천시설(다기능보 등), 광역 상수도, 물재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운영 및 관리사업과 산업단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등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³⁾에 따라

3) 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 가. 수도시설의 건설
 -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수행하고 있고(참고자료 3. 한국수자원공사 수행 사업 참고),

하수도 사업의 경우 댐 상류 지역을 제외한 하수도 분야 업무를 환경
공단으로 일원화⁴⁾ 함에 따라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관리 사업만을 제한적으로 실시 중임.

[표] 한국수자원공사가 현행법상 국내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수행 사업(법 제9조 관련)
-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및 용수전용댐의 건설, 운영 및 관리(제1항제1호) - 하천시설(다기능보 등) 및 경인항 등 주운시설(수로포함) 건설, 운영 및 관리(제1항제1호) - 광역상수도 및 산업용수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제1항제2호) -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등 지방상수도 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제1항제2호) - 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등 물환경 관리사업(제1항제3호) - 물재이용(하수재이용 포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제1항제4호의2)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사업(분양 포함)(제1항제5호) - 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설비의 건설 및 운영·관리(제1항제5호의2) - 해외사업(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 가능)(제2항) * 요금징수, 이주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교육 및 기술지원 등도 사업범위에 포함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 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탁관리자로서 상수원 수질 관리 차원에서 댐 상류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은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함

한편, 물산업 전문기관인 영국의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2022)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및 산업 고도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여 2022년 현재 약 1,280조원(9,80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2028년까지 연평균 3.8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⁵⁾,

최근 5년 간 전세계 물 프로젝트 발주 1,324건 중 하수도 사업이 576건(43.5%), 상·하수도 등 복합사업이 239건(18%)으로 하수도 분야 사업 발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⁶⁾,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법 상 사업 제한 규정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하수도 사업 등 해외에서 발주한 물관리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⁷⁾.

이에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①장소의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물관리 사업 동반 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5)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 6p, 환경부, ’24. 3. 19.

6) 해수담수화 262건, 상수도 157건, 하수도 576건, 수도(복합) 230건 등(GWI, ’19.7 ~’24. 7)

7)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민간기업, 발주국 기관 등이 발주한 해외 하수도사업 참여를 제안받았으나 법적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안받은 해외발주 하수도사업 사례]

국 가	제안자	프로젝트명	용 량	사업비	비 고
우즈베크	현대엔지니어링	타슈켄트 하수처리 시설사업	25만톤/일	2,600억원	’22년
에콰도르	포스코 건설	하수처리 연계 소수력	65만톤/일	약 1조원	’22년
사우디	사우디 수자원공사(NWC)	사우디 워터프로젝트	미정(943건)	약 30조원	’23년

자료:환경부

국내에서 하수도 사업 분야를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⁸⁾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외 하수도사업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⁹⁾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또한 법률에서 해외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열거하고, 그 외의 사업 실시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그 외의 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¹⁰⁾의 수행 근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개정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¹¹⁾.

문 의 처

02)6788-5547

8)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총 수입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이고(50% 이상인 경우 공기업), 기금을 관리하지 않으며(기금을 관리하는 경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부정책 집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참고자료 4. 공공기관 지정 요건 참고)

9) 해외 하수도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장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이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수입구조를 보면 전액 정부지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2022년 및 2023년 투자집행액 없음. ALIO 경영공시시스템), 2024년 12월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ODA 사업을 포함하여 해외 하수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0) 환경부는 수질조사,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물환경 관리사업, 조력,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힘

11) 이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은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유관기관 사이의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기관 간 사업 범위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부는 개정안은 국외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국외투자사업은 기관 간 기능중복 우려가 크지 않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은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사항을 정할 때 충분히 기관 간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참고자료

1.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조정 개요(2019. 6)¹²⁾

□ 배경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18.6) 정책에 따라 환경부가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 업무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 및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환경부로 이관

□ 목적

- 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분야 공공기관인 수공과 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업무중복 해소 및 고유역량 강화

□ 추진경위

- ('17.5) 대통령 특별지시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 발표
- ('18.5) 물3법(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산업진흥법) 국회 의결, 하천 시설관리 제외 국토부 물관리기능(수자원국, K-water) 환경부로 이관
- ('18.10) 수자원공사 및 환경공단 기관별 자체 조직 진단
- ('18.12~'19.4) 한국행정학회 주관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 수행
 - * 산하기관 객관적 역량 검토, 전문가, 사회적 공론화, 기능조정 방안 도출
- ('19.3) 1차 조정안 마련,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기관 핵심역량 중심으로 상·하수도 분리 방안 공청회 발표
- ('19.4)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능 조정 수정안 마련
- ('19.5) 연구진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물 3국 협의, 양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 조정안 마련
- ('19.6) 「수공·공단 통합물관리 협력 업무 협약」 체결

12)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수공·공단 통합물관리 협력 업무 협약서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 협력 업무 협약

2018년 6월 수량과 수질·수생태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고유역량을 강화하고, 물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 간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금번 기능 조정을 통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 최적의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하나, 상수도 분야는 광역과 지방을 아울러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하나, 하수도 분야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하나, 물 재이용 분야는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하나, 수질 분야는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하나, 물순환 분야는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되, 비점저감 등 오염관리 분야에서는 환경공단도 참여한다.

하나, 지하수 관리 분야에서 수자원공사는 이용과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는 한편, 환경공단은 토양오염과 함께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이와 연계된 정밀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하나, 물산업 분야에서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등 물 이용을, 환경공단은 하수도 등 오염관리를 담당한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공단이 운영하되,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시스템·측정망 분야는 지하수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정보의 상호 연동을 강화하고, 지하수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정보시스템과 측정망·관측망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환경공단은 지하수 오염이 우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오염관리와 함께 측정망 설치·운영도 담당한다.

하나, 수자원공사는 물 분야 공공수요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 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 책임이 있는 댐 상류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저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상기 역할 분담 및 협업 사항 외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무와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약속한다.

2019년 6월 26일



사 장 이 한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준영

2.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관리 기능조정 결과(표)13)

분 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		○ (일원화)	X
하수도	하수도	△ - 댐상류 운영·관리	○ (일원화)
	재이용	△ - 물공급 연계시 협업	○ (주관)
	하수도·재이용 민간투자사업	- 환경공단의 준정부기관 특성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 K-water 참여가능	
수질		△ - 댐상류 수질조사 - 댐상류 비점오염저감	○ (주관)
물순환		○ (주관)	△ - 비점 저감분야 참여
지하수		○ - 이용, 현황조사 -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 관측망·측정망 통합운영	△ - 토양연계 오염관리 - 우심지역 정밀조사 - 우심지역 측정망 운영
물산업	육성지원	△ - 물이용 분야	△ - 오염관리 분야
	클러스터	△ (협업)	○ (운영)

1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 수행 사업(법 제9조 관련)¹⁴⁾

사 업		내 용	관련법령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시설 건설·운영·관리 (댐·보 등) <제9조① 제1호>	댐	▪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용수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댐법 제3조, 제5조, 제9조 하천법 제14조
	다기능보	▪ 다기능보의 건설 및 운영· 관리	하천법 제14조, 제92조
	아라뱃길	▪ 경인항, 주운수로 운영 ▪ 물류단지 개발·분양	항만법 제9조, 제104조
수도시설 개발· 이용 관련 사업 (건설·운영· 관리 등) <제9조① 제2호>	광역 상수도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 수도시설 건설(노후관개량, 복선화) 및 급수체계조정 사업	수도법 제12조
	지방 상수도	▪ 운영효율화(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 현대화 사업 등	수도법 제23조
	산업용수	▪ 산업용수시설 위탁관리 운영	수도법 제12조, 제43조, 제48조, 제50조
댐·댐 상류 물환경 관리사업 <제9조① 제3호>	물환경 관리사업	▪ 댐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 등 물환경 개선시설 건설·관리	하수도법 제74조 댐법 제9조, 제48조 물환경보전법 제9조, 제57조의2
	하수도	▪ 지자체 수탁 운영·관리 ▪ 하수도 건설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제9조① 제5호>	특수지역 개발	▪ 시화지구 등 특수지역 개발	산업법 제16조, 제39조
	산업단지	▪ 구미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관리사업 <제9조① 제5의2>	발전	▪ 다목적댐 대·소수력	전기사업법 제7조
	신재생 에너지	▪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상동 및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2조의5
타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 사업 <제9조① 제12호>	친수사업	▪ 부산 EDC 조성사업 등	친수법 제12조
	클러스터	▪ 강원수열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개발지원법 제19조
	스마트 재생사업	▪ 김포대곶 스마트도시 사업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해외사업 <제9조②>	해외	▪ ODA, 기술협력사업 ▪ 수력발전 등 투자사업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14)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상 한국수자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2개)	시장형 (14개)	● 직원 정원 300인 이상 ● 총수입액 200억 원 이상 ●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	● 자체 수입이 총수입 50% ↑ * 기금관리 또는 위탁 시 85%↑	● 자산 규모 2조 원 ↑ ● 자체 수입이 총수입 85% ↑	가스공사 전력공사	
	준시장형 (18개)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u>수자원공사</u> 토지주택공사	
준정부 기관 (55개)	기금 관리형 (12개)			● 자체 수입이 총수입 50% ↓ * 기금관리 또는 위탁 시 85%↓	●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	신용보증기금 연금공단
	위탁 집행형 (43개)				● 정부업무 위탁집행	고용정보원 <u>환경공단</u>
기타공공기관 (240개)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한국투자공사 대한체육회	
	연구개발 목적기관 (49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과학연구원 국방연구소	
총 327개						

자료: 환경부

5.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¹⁵⁾

- (정책목표)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추진근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전략과제	세부 과제
1. 물관리기술 혁신	·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 · 우수 물관리기술 개발·적용 기반 마련 · 유망 물관리기술 사업화
2. 물기업 경쟁력 향상	· 물산업 체계적 육성 · 강소 물기업 경쟁력 강화 · 물산업 실증 인프라 활용성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 ·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4. 전문인재 양성 및 물산업 진흥기반 체계화	·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 물산업 혁신 거버넌스 확립 · 물산업 지원제도 및 체계 정비

15) 자료: 환경부